

위 임 장			수입인지 50원
수 임 인 (대 리 인)	성명		
	주소		
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「공증인법」 제56조의2(어음·수표의 공증 등)에 따른 다음 어음의 금원지 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 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			
액 면	금 원정		
발 행 일		발 행 지	
지 급 기 일		발 행 인	
양 도 일		수 취 인	
지 급 일		양 도 인	
지 급 장 소		양 수 인	
년 월 일			
위 임 인	성명 주소인 감		
위 임 인	성명 주소인 감		
위 임 인	성명 주소인 감		